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채용비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을 마련할 하위법령을 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채용비위 관련 제재조치 규정(안 제9조4, 제9조의5)

‘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’ 규정이 「국가공무원법」에 신설되어
특정직 공무원인 군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「군인사법 시행령」을
개정할 필요가 있어 채용비위 관련자 제재조치 규정을 신설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유관기관과 합의 완료(2023. 10.13. ~ 10.23.)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1. 23.~3. 4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완료

- 기술규제, 경쟁제한 및 중소기업 영향평가 심사결과 규제 없음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4 및 제9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4(선발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)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장교, 준사관, 부사관, 간부후보생, 예비 장교후보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시험에 개입하거나 선발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선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선발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②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선발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이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
1.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과 사유
2. 소명 기한
3. 소명 방법

4.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

5.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

③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 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.

제9조의5(선발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)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선발비위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대령급 이상 장교로 한다.

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의 계급 또는 임용될 계급보다 상위계급의 장교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

2. 위원 중 1명은 법무장교로 하되,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

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,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선발비위 관련자 합격취소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4, 제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선발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4(선발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)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장교, 준사관, 부사관, 간부후보생, 예비 장교후보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시험에 개입하거나 선발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선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선발 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 이 경우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</u> <u>②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선발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이 때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</u>

<신 설>

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
1. 합격 또는 임용 취소의 내용
과 사유

2. 소명 기한

3. 소명 방법

4.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
방법

5.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

③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
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
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
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
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
명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취소 처분은
합격 또는 임용 당시로 소급하
여 효력이 발생한다.

제9조의5(선발비위심의위원회의

설치 등) ① 제9조의4제1항에
따른 합격 또는 임용 취소여부
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
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선발
비위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
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.)를 둔다.

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

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내의
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
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
지명하는 대령급 이상 장교로
한다.

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을 다음
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
1.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당사자
의 계급 또는 임용될 계급보
다 상위계급의 장교 중 시험
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
가 지명하는 사람

2. 위원 중 1명은 법무장교로 하
되,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
임용권자가 지명하는 사람

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
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
다.

⑥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
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
석, 의견의 제시 또는 증거물의
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
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

은 시험실시관의 장 또는 임용 권자가 정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인력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5132